

# 2011년 10월 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**종량제** 실시안내

- 정부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'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**종량제**'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,
- 공주시 동지역에서도 10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.



## ▶▶▶ 달라진 내용

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 
음식물 쓰레기 배출



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배출

- 강남 - 월·수·금요일 19:00~23:00
- 강북 - 일·화·목요일 19:00~23:00
- 음식점 - 매일수거 19:00~23:00 (토요일 제외)

## ▶▶▶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(스티커)

-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판매
  - 5ℓ : 170원, 25ℓ : 850원, 120ℓ : 4,070원

## ▶▶▶ 이런 경우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
- ▶ 이물질(비닐, 병뚜껑, 뼈다귀, 딱딱한 과일씨, 조개껍데기등)을 배출하는 경우
- ▶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

## ▶▶▶ 기타 준수사항

- ▶ 전용수거용기는 깨끗이 관리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합니다
- ▶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간을 준수하고 빈용기는 꼭 집안으로 가져갑니다